

충남대학교 · 군산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협약서 (1)

2013. 08. 01.

충 남 대 학 교
군 산 대 학 교
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



충남대학교 · 군산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충남대학교에서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BTL 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부분이 본 사업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 군산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2012년 8월 1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충남대학교는 2012년 11월 14일 (가칭)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본 사업의 성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붙임 협약서와 같이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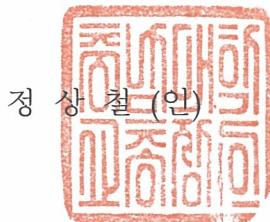
붙임 : 충남대학교 · 군산대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1부.

2013. 08. 01.

“주무관청”

충남대학교

총장



군산대학교

총장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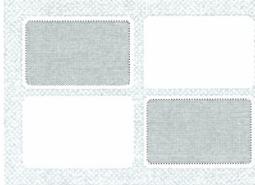
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

대표자

한승구(인)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3
제 4 조 (해석)	11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12
 제 2 장 기 본 약 정	12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2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3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4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4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15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15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15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6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8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19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20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0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20

제 19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1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21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22
제 22 조 (공사기간)	23
제 23 조 (공사의 착수)	23
제 24 조 (공정관리)	24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24
제 26 조 (문화재)	25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26
제 28 조 (지체상금)	26
제 29 조 (보험가입)	26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27
제 31 조 (기성검사)	28
제 32 조 (민원처리)	28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9
제 34 조 (공사책임관리)	30
제 35 조 (부속사업)	31
제 36 조 (부대사업) (삭제)	31
제 37 조 (준공전 사용인가)	31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32
제 39 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2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제 40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33
제 41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34
제 42 조 (운영비의 결정 등)	34
제 43 조 (운영비의 변경)	35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35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36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7
제 47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37
제 48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38
제 49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삭제)	39

제 50 조 (경미한 사업)	39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40
제 51 조 (성과의 측정·보고)	40
제 52 조 (성과의 점검)	40
제 53 조 (성과의 평가)	41
제 54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42
제 55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43
제 56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43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44
제 57 조 (수익률의 산정)	44
제 58 조 (수익률의 조정)	45
제 59 조 (임대료의 산정)	45
제 60 조 (임대료의 조정)	46
제 61 조 (운영비의 산정)	46
제 62 조 (운영비의 조정)	47
제 63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47
제 64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47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48
제 65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삭제)	48
제 66 조 (보상업무 등)	48
제 67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48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9
제 68 조 (위험배분의 원칙)	49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49
제 7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50
제 7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51
제 7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53
제 11 장 협약의 종료	54

제 7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54
제 7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5
제 74 조의 2 (매수청구권)	57
제 7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7
제 76 조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58
제 7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9
제 78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60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60
제 7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0
제 8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0
제 8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61
제 8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62
제 8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3
제 13 장 분쟁의 해결	63
제 84 조 (분쟁의 해결)	64
제 85 조 (중재)	64
제 14 장 기타사항	65
제 86 조 (협약의 변경)	65
제 87 조 (협약의 수익자)	65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66
제 89 조 (일부무효)	66
제 90 조 (목적적 조건의 배제)	66
제 91 조 (비밀유지)	66
제 92 조 (통지)	67
제 93 조 (언어)	68
제 94 조 (준거법)	68
제 95 조 (협약의 효력)	68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69
[별표 2] 본 사업의 구조	73

[별표 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74
[별표 4]	총민간사업비	75
[별표 5]	총민간투자비	79
[별표 6]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83
[별표 7]	보험가입 계획	84
[별표 8]	부속시설	85
[별표 9]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	86
[별표10]	시설임대료 산정방법	89
[별표11]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90
[별표1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	103
[별표13]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119
[별표14]	해지시 지급금	120
[별표15]	공과금	121
[별표16]	재무모델(C/D)	124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		125
[별첨 1]	가구 및 비품 성과요구수준서	398
[별첨 2]	가구 및 비품 목록표	440
[별첨 3]	생활관 공간 프로그램 및 공간별 관리운영권 설정범위	446
<부록 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448
<부록 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452
<부록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합의사항	455



실시협약서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와 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는 2013년 08월 01일 본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전 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주무관청”이라 한다)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BTL 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경쟁력을 제고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12년 08 월 01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2년 11월 14일 (가칭)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기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 규모는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와 같다.
-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구조는 별표 02(본 사업의 구조)에 따른다.

NO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인허가 등 행정지원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감독 및 기성확인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인계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인수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며, 건설 ·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 대 생활관(대덕, 보운)과 군산대 생활관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표8(부속시설)의 시설을 부속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 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 ④ 본 시설의 최종이용자의 이용대가는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게 있다.
- ⑤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단위대학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산률”이라 함은 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 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한다.
2.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4.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째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5.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6.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로부터 본 사업시설(또는 단위 대학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8. “공사비”라 함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말한다.
9.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0.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2.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3.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5. “기본재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6.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7. “기준재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8.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동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9.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0.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된 자를 말한다.
21.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22. “물가변동비”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2012년08월01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23.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4.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162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 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28.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9.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시설(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30.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1. “부속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별표8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시설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2.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33.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 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4.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 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35. “비교재무모델”이라 함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36.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 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38.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 되는 날까지로 한다.
39.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 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0.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41.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 산출기준시점(2012년08월0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3째 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42.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3.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시행령 제16조의 첨부서류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한다.

44.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45.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46.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47.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

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48.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9. “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50.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BTL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sse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51.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최근 자금차입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2.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53.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4.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55.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그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56.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9조에 따라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준공사실의 인정은 주무관청이 준공검사결과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신청을 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하고, 준공보고서가 반려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치유하고 준공검사를 재신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한다.

57.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축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58.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59.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60.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61.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준공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각 시점별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2.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총사업비를 의미한다.

63.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 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64.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81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65. “출자예정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66. “협약당사자”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 (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의 각 조문의 제목은 각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사업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 및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유전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

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의 청구와 수령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사로 하여금 피보험자들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는 '시공하자 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민간투자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본 협약 제39조에 따라 각 단위 대학별로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임대가 개시되는 날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한 서약서와 같이 운영기간 중 협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 ①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는 별표04(총민간사업비)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 (2012년08월01일) 불변가격 금 32,640백만원으로 한다.
-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별표05(총민간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가격 금 35,401백만원이다.
-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제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을 정산하기로 하며,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준공시점에 실시협약 기본재무모델에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4.81%(기준금리 3.26% + 가산금리1.55%)이다. 단, 본 협약에 달리 조항이 없는 한 가산금리는 조정되지 아니한다.
- ⑦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삭제)~~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3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 · 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와의 실제 감리 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 사업비를 변경한다.
- ③ 본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고 차액이 발생 시 총민간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총민간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총민간사업비 증가 요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제3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⑥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나 항목은 실시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⑦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⑨ 본 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재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분은 임대료 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한다.

- ⑩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운영기간 중 증축 요구 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⑪ 제10항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실시설계승인 시 확정된 공사비 산출서를 기반으로 공사비 변경을 실시하고 설계비와 부대비를 산정한다.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하여 실시협약 시 지표금리와 가산율[a]을 적용하며, 운영비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 및 협약 체결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금재조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합의 하여 자금조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별표06(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전액을 선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 현재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06(약정 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 및 본 협약과 상충함이 없을 경우 적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차입계약 (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설계자”라 한다), 시공회사(이하“시공자”라 한다)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내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의 규정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 체결시 협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제외되며, 본 협약에 적용하였거나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적용하기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 지체일수 × 0.01%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 만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8일 이내로 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15. 2월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 이전에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실시계획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등 본 협약에 따른 절차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부분설계 포함)와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완료한 대학에 대하여 Fast Track 적용으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4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85%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른 공정관리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을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 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 발굴(시굴 포함)은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처리는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 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 제70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본 협약 제71조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주무관청이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체상금)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각 단위대학별 총사업비로 하되, 동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성부분은 제외한다.

제 29 조 (보험가입)

- ①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표07(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보험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보험료, 위험 분담 등에 관한 실시협약상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조건의 변경 시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담 조건보다 주무관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 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의월 10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② 사업민원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추가 금융비용 포함)을 총민간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만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감리비 총액 및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공사감리자의 선정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 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제30조 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8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9조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검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도 당해 검사보고서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

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 35 조 (부속사업)

-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의 시설규모 및 범위는 별표08(부속시설)와 같다.
- ② 제1항의 부속사업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하에 시행토록 한다.
-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제12조의 총민간투자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제 36 조 (부대사업) (삭제)

제 37 조 (준공전 사용인가)

- ①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단위대학별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단위대학별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준공전 사용 및 그 절차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39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준공전 사용인가를 한다.
- ③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BTL사업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교육시설 시설관리 · 운영 지침

포함)을 토대로 하여 협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기 운영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30일 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 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4 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9 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리 운영권 개시일정에 관해 BTL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교육시설 시설관리·운영 지침 포함)을 토대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검사 결과 본 협약 부록01(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단,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

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는 본시설의 운영비 전체와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 비용까지로 하되, 부속시설의 자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부속시설의 순이익 산정시 별도로 반영되므로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 41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 42 조 (운영비의 결정 등)

- ① 제63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12년 08월 0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7,300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2(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과 같다.
-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공과금)을 따른다.

제 43 조 (운영비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변경 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본 협약에 따른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의 증축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의 청소 · 보안경비
3. 본 사업시설의 환경위생관리
4.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5. 부속시설의 영업 등의 운영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7. 기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이행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하에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 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

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 9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과 주무관청의 승인은 BTL사업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교육시설 시설관리 · 운영 지침 포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7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제8장(정부지급

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를 별표00(충당금 적립일정)에 적립하고 그 중 일부는 일부수선항목 및 비율을 정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적립된 충당비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게 귀속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⑥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⑦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제 48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 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수입을 주무관청에서 시설관리시스템(FMS)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시설을 유지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시스템에 의한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분 기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해당분기 익월의 1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3항의 증빙자료가 정확한 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54조의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제4항의 조사·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조사하게 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 ⑥ 제5항의 재조사를 한 결과, 재조사한 증빙자료와 운영실적의 순이익(A)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운영순이익(B)이 별표09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C)보다 적거나 이와 같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8항에 불구하고 (A - C)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주무관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 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⑧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50:50)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제 49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삭제)

제 50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제48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7 장 성과의 점검 · 평가

제 51 조 (성과의 측정 · 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는 월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매분기 마지막 월 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갈음한다.
-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52 조 (성과의 점검)

- ① 주무관청은 제51조의 월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시정조치를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제51조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 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성과점검을 위해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3.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고객 만족도 조사
- ⑤ 주무관청은 제54조에 따른 제2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3 조 (성과의 평가)

- ①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월보고서 또는 성과실적을 토대로 월별(분기별)로 평가하도록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수시 성과확인 평가, 관리자 평가, 점검관리 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의 4개 분야에 대해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성과의 측정 및 확인·점검 결과를 합산하여 매 월(또는 분기) 업무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지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록01(성과 요구수준서)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54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본 협약에 따라 성과 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 항목과 기준은 부록01(성과 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 54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주무관청은 제5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전 부록02(성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3명, 사업시행자측 3명,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 3명, 관련분야 전문가 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성과평가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따른 성과점검 등 성과평가를 위한 개별 위원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은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다.(단,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는 단위 학교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③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은 주무관청이 선임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혹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자로 한다.
-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부록02(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55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③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산정된 “매 평가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의 정부지급금을”, 제53조에 따른 매 평가대상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개시 이후 “최초 1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제8장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임대기간중의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해 최종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② 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의 정부지급금 상당액의 2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성과평가를 받은 분기의 다음 분기의 성과평가시 총 평가등급이 A등급일 경우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 지급 요령)에 따라 제1항에서의 감액금의 50% 이내에서 가산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서 제시된 당해 분기의 총 평가등급을 B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분기 이상 제4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본 협약 제45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7 조 (수익률의 산정)

- ① 본 사업의 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1.23%)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 세 차감전 경상 수익률이며 협약체결시의 수익률은 4.16%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가산율은 본 조의 수익률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수익률은 제3항의 지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 ③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수익률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8조에 따라 조정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8 조 (수익률의 조정)

- ①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가산율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지표금리는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제 59 조 (임대료의 산정)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동안(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제12 조 내지 제13조)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 ② 임대료는 별표10(시설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09(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서 제시된 부속시설의 매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공제하여 본 사업시설 임대료를 산정한다.
- ③ 별표11(임대료 및 지급계획) 상의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에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율 3%/년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④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 ⑤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⑥ 본 시설이 조기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될 경우, 조기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60 조 (임대료의 조정)



-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7조(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 기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조정기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제 61 조 (운영비의 산정)

- ①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제42조 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적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62 조 (운영비의 조정)

- ① 본 협약 별표01(본 사업 개요)에서 제시한 본 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실제 발생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변동비)의 감소부분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변경을 통해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63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9조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 한다. 다만, 제60조를 근거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매 분기별로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임대료와 일괄하여 지급한다.
- ③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 말일 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 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 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64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 ① 사업시행자는 제63조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최종일 15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 영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대기간중의 최종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완료일로부터 15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사업시

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 ②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정부지급금 산정시 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5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삭제)

제 66 조 (보상업무 등)

- ① 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주무관청에서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처리의 지역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67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

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74조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4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제70조 및 제71조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기간까지의 제56조 제1항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감액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정부지급금 총액의 20% 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7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74조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4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물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위험물 및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본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건설이자 등 ~~증가~~ 금융비용 포함)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7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

치는 경우

3.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2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 다. 위'가'호 및 '나'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제3항 제2호

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7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 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 제1호에 따른 인계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에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3(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7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 69조 제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사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와 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동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 ⑤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⑥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80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⑦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74 조의 2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7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6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6 조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 14(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 (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 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78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 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 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8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① 제74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 통지를 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에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8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청람에듀빌2차주식회사의 출자예정자 구성 및 출자예정지분은 별표0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출자자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 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출자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 출자자 및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출자자간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 승인의 신청 이외에 본 협약에 정한 바와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을 신청하여 사실상의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2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및 제83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산정된 효과(이익)는 협약 당사자간 배분없이 전액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재조달을 준용할 경우 기준재무모델은 협약체결시의 재무모델을 말하며, 비교재무모델은 변경승인시의 재무모델을 말한다.

제 8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 「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4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85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 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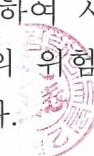
제 85 조 (중 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6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 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7 조 (협약의 수의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9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0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 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91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 한 것이어야 한다.

제 92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 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수신 : 충남대학교 총장

참조 : 생활관장, 시설과장, 재무과장

전화 : 042-821-7200

팩스 : 042-821-8893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수신 : 청람에듀빌2차(주) 대표이사 한승구

참조 : 경영정보실

전화 : 042-480-7218

팩스 : 042-480-7288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 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

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3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94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5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별표 및 부록으로 구성되며, 별표 및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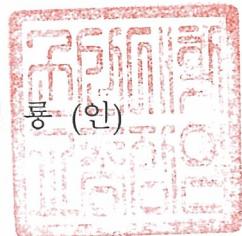
2013년 08월 01일

[주무관청]

충남대학교 총장 정상철 (인)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인)



[사업시행자]

청람에듀빌2차(주) 대표 한승구 (인)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충남대학교·군산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2. 사업개요(기본설계 기준)

-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번지 대덕캠퍼스 부지내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대지면적	12,300.00 m ²
수용인원	750명 / 375실
건축면적	1,802.50 m ²
연 면 적	13,500.97 m ²
지상층면적	12,970.95 m ²
건 폐 율	14.65%
용 적 률	105.45%
주차대수	98대(장애인주차 4대 포함)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1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9.75m
주요외장재	점토벽돌 / 외부용 수성페인트

-총별면적개요

구 分	면 적
지하1층	530.02 m ²
지상1층	1,090.59 m ²
지상2층	944.73 m ²
지상3~8층	6,328.80 m ²
지상9층	915.00 m ²
지상10~15층	3,486.11 m ²
지상16층	205.72 m ²
합 계	13,500.97 m ²

-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번지 보운캠퍼스 부지내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대지면적	5,500.00 m ²
수용인원	150인 / 95실
건축면적	417.16 m ²
연 면 적	2,816.23 m ²
지상총면적	2,672.55 m ²
건 폐 율	7.58%
용 적 률	48.59%
주차대수	15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9.80m
주요외장재	석재쁨칠 / 외부용 수성페인트

-층별면적개요

구 분	면 적
지하1층	143.68 m ²
지상1층	375.63 m ²
지상2층~ 지상3층	670.92 m ²
지상4층	334.83 m ²
지상5층~ 지상7층	1,006.38 m ²
지상8층	284.79 m ²
합 계	2,816.23 m ²

- 군산대학교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군산시 대학로 558번지(미룡동 69번지) 군산대학교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
대지면적	822,091.00m ² (사업부지:2,638.00m ²)
수용인원	300명 / 150실
건축면적	653.46m ² (도시계획시설인가: 3,000.00m ²)
연 면 적	5,401.59m ² (도시계획시설인가: 11,000.00m ²)
지상총면적	4,852.40m ²
건 폐 율	9.78%
용 적 률	30.32%
주차대수	29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1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2.65m
주요외장재	석재쁨칠 / 외부용 수성페인트

- 층별면적개요

구 분	면 적
지하1층	549.19m ²
지상1층	426.01m ²
지상2층	323.67m ²
지상3층~9층	2,503.62m ²
지상10층~11층	675.16m ²
지상12층	312.50m ²
지상13층~14층	611.44m ²
합 계	5,401.59m ²

3. 본 사업의 범위

- 가. 조사
- 나. 설계 · 시공 · 공사감리
- 다. 각종 인허가 업무
- 라. 시설의 양도
- 마. 학교 내 기숙사 운영기간 중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기간 : 20년)

4. 본 사업의 수요

-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구 분	실 수	수용인원	비 고
미혼자숙소	275	450	일반사생 2인1실 : 175실 일반사생 1인1실 : 96실 장애인실 : 4실
기혼자숙소	100	300	기혼자 원룸 : 85실 기혼자 투룸 : 15실
합 계	375	750	

-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



구 분	실 수	수용인원	비 고
미혼자숙소	95	150	일반사생 2인1실 : 55실 일반사생 1인1실 : 39실 장애인실 : 1실
기혼자숙소	-	-	
합 계	95	150	

- 군산대학교

구 分	실 수	수용인원	비 고
미혼자숙소	130	260	일반사생실 2인1실 : 126실 장애인실 : 4실
기혼자숙소	20	40	
합 계	150	300	

[별표 2]

본 사업의 구조

본 사업의 추진단계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추진단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인허가 등 행정지원
2	자금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감독 및 검사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검사 및 기성확인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수

[별표 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	출자지분	시공지분	금액
시공사	계룡건설산업(주)	0.50%	35.00%	9
	한동건설(주)	0.10%	10.00%	2
	신동아건설(주)	0.10%	10.00%	2
	진흥기업(주)	0.10%	15.00%	2
	금성건설(주)	0.20%	30.00%	4
	[소 계]	1.00%	100.00%	18
전문 운영사	(주)케이알산업	5.00%		89
	[소 계]	5.00%		89
재무적 투자자	신한BNPP희망나눔비티엘사모특별자 산투자신탁[금전채권]의 신탁업자 농협은행(주)	94.00%		1,664
	[소 계]	94.00%		1,664
총 계		100.00%		1,770

[별표 4]

총민간사업비

- 총괄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 사 비	50	50	-	-
설 계 비	1,385	1,385	-	-
공 사 비	28,755	4,204	23,908	643
보 상 비	-	-	-	-
부 대 비	2,243	841	1,291	111
운영설비비	81	-	-	81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127	46	75	6
총사업비	32,640	6,526	25,273	841

(주) 공사착수일은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향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실제 착수일로부터 548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총민간사업비

- 충남대 대덕캠퍼스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 사 비	26	26	-	-
설 계 비	863	863	-	-
공 사 비	18,005	3,655	13,918	432
보 상 비	-	-	-	-
부 대 비	1,322	559	710	52
운영설비비	44	-	-	44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79	29	46	4
총사업비	20,338	5,132	14,675	531

(주) 공사착수일은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향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실제 착수일로부터 548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총민간사업비

- 충남대 보운캠퍼스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 사 비	10	10	-	-
설 계 비	174	174	-	-
공 사 비	3,570	4	3,478	89
보 상 비	-	-	-	-
부 대 비	318	88	203	27
운영설비비	15	-	-	15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16	6	9	1
총사업비	4,104	282	3,690	132

(주) 공사착수일은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향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실제 착수일로부터 548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총민간사업비

- 군산대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 사 비	13	13	-	-
설 계 비	348	348	-	-
공 사 비	7,180	546	6,512	122
보 상 비	-	-	-	-
부 대 비	603	193	378	32
운영설비비	22	-	-	22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32	12	19	1
총사업비	8,198	1,112	6,908	178

(주) 공사착수일은 201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향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실제 착수일로부터 548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별표 5]

총민간투자비

- 총괄

(단위 : 백만원, 경상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비	52	52	-	-
설계비	1,433	1,433	-	-
공사비	30,480	4,379	25,405	696
보상비	-	-	-	-
부대비	2,364	872	1,372	120
운영설비비	87	-	-	87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134	48	79	6
총경상사업비	34,549	6,783	26,856	910
건설이자	852	13	713	125
총민간투자비	35,400	6,797	27,568	1,035

(주) 건설이자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인 3.26%를 적용함

총민간투자비

- 충남대 대덕캠퍼스

(단위 : 백만원, 경상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비	27	27	-	-
설계비	893	893	-	-
공사비	19,060	3,806	14,786	468
보상비	-	-	-	-
부대비	1,391	580	755	56
운영설비비	47	-	-	47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83	30	49	4
총경상사업비	21,501	5,336	15,590	575
건설이자	574	11	484	78
총민간투자비	22,075	5,348	16,075	653

(주) 건설이자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인 3.26%를 적용함

총민간투자비

- 충남대 보운캠퍼스

(단위 : 백만원, 경상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비	11	11	-	-
설계비	180	180	-	-
공사비	3,800	4	3,700	97
보상비	-	-	-	-
부대비	336	91	216	29
운영설비비	17	-	-	17
제세공과금	-	-	-	-
영업준비금	17	6	10	1
총경상사업비	4,360	292	3,926	143
건설이자	81	1	64	16
총민간투자비	4,441	293	3,990	159

(주) 건설이자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인 3.26%를 적용함

총민간투자비

- 군산대

(단위 : 백만원, 경상가 기준)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비	14	14	-	-
설계비	360	360	-	-
공사비	7,620	569	6,919	132
보상비			-	-
부대비	637	200	401	35
운영설비비	24	-	-	24
제세공과금	-		-	-
영업준비금	34	12	20	2
총경상사업비	8,687	1,155	7,340	192
건설이자	197	1	164	32
총민간투자비	8,884	1,156	7,504	224

(주) 건설이자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인 3.26%를 적용함

[별표 6]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민간투자비	자기자본	타인자본
2013년	3 사분기	2,890	1,770	1,120
	4 사분기	3,907	-	3,907
	소 계	6,797	1,770	5,027
2014년	1 사분기	5,474	-	5,474
	2 사분기	7,264	-	7,264
	3 사분기	8,224	-	8,224
	4 사분기	6,606	-	6,606
	소 계	27,568	-	27,568
2015년	1 사분기	1,035	-	1,035
	2 사분기	-	-	-
	3 사분기	-	-	-
	4 사분기	-	-	-
	소 계	1,035	-	1,035
합 계		35,400	1,770	33,630
자기자본 비율			5.00%	

[별표 7]

보험가입 계획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보험대상률		부보 기간	부보대상	부보 금액	보험 요율(%)	보험료	비 고
공 사 기 간 중 보 험	건설공사보험 (Section I&II)	공사착공 ~완공시점	공사비	28,755	0.140%	40.26	
	예정이익상실 보험	공사착공 ~완공시점	운영초기 12개월간의 고정운영비	1,710	0.270%	4.62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공사착공 ~완공시점	SPC 인건비	70	0.080%	0.06	
운 영 기 간 중 보 험	재산종합보험 (PAR)	운영 기간 매년 갱신	공사비 운영설비비	28,836	0.040%	11.53	
	영업배상 책임보험 (CGL)	운영 기간 매년 갱신	운영사 측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			1.70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운영 기간 매년 갱신	SPC 및 운영사 인건비	171	0.021%	0.04	

[별표 8]

부 속 시 설

- 충남대 대덕캠퍼스

구분	시 설 명	연면적(m ²)	개소	비고
필수	세탁/다리미실	98.70	1	
	미용실	89.10	1	
	당구장	144.15	1	
	세탁소	(55.89)	1	협상 반영사 항
총 계		331.95 (387.84)	4	

주) 세탁소 : 임대계약 행위에 한하여 사업자(SPC)가 수행함



- 충남대 보운캠퍼스

구분	시 설 명	연면적(m ²)	개소	비고
필수	세탁/다리미실	41.03	2	
총 계		41.03	2	

[별표 9]

부속시설의 운영 순이익

- 총괄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부속사업	연간			초과순이익 배분 비율 (주무관청:SPC)	
	추정순이익	운영기간			
		학기중	방학중		
세탁실/다리미실	2.35	운영	운영	50 : 50	
미용실	3.28	운영	운영	50 : 50	
당구장	4.52	운영	운영	50 : 50	
세탁소	-	운영	운영	100 : 0	
계	10.15				

주1) 상기 부속사업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시 계약조건 및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주2) 세탁소 : 임대계약행위에 한하여 사업시행자(SPC)가 수행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는 주무관청이 수행함. 또한,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부속사업 순이익은 100% 주무관청에 귀속됨

- 충남대 대덕캠퍼스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부속사업	연간			초과순이익 배분 비율 (주무관청:SPC)	
	추정순이익)	운영기간			
		학기중	방학중		
세탁실/다리미실	1.96	운영	운영	50 : 50	
미용실	3.28	운영	운영	50 : 50	
당구장	4.52	운영	운영	50 : 50	
세탁소	-	운영	운영	100 : 0	
계	9.76				

- 충남대 보운캠퍼스

(단위 : 백만원, 불변가 기준)

부속사업	연간			초과순이익 배분 비율 (주무관청:SPC)	
	추정순이익	운영기간			
		학기중	방학중		
세탁실/다리미실	0.39	운영	운영	50 : 50	

1) 부속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① 부속사업을 임대방식으로 위탁할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장기계약여부 (최장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무관청과 합의할 수 있음)
 - 경쟁입찰여부
 - 초과순이익 주무관청 확인 의무조항 명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시장가격 반영
 - 운영범위, 운영기간을 명시
 - 위탁계약서의 전문기관 검토 의무 등
- ② 부속사업을 임대로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주무관청 입회하에 체결 하여야 함.
- ③ 부속사업을 임대로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각 시설별 임대차 계약별로 대학과 공동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임대보증금 환불 및 임대료미납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 경우에만 인출(인출사유발생에 따른 중도해지 인출을 포함한다)하기로 하며, 인출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동명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정기예금 만기시(중도해지 인출시도 포함한다)정산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 : 5로 수익금처리하기로 함.

2) 부속시설 자료제출 등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부속시설의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② 사업시행자는 아래 절차와 같이 경쟁입찰에 의거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 입찰내역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기재함.
 - 최저입찰예정가 기재(본 협약서의 각시설별 추정순이익 이상으로 하며, 최저입찰예정가 미만으로 제시되어 2회 이상 유찰 시 사업시행자는 최저 입찰 예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 부속시설 중 '식당'에 대해서는
 - ⓐ 사용자 이용 현황 및 수입금 현황을 매년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단 직영의 경우 주무관청 요구시 수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④.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과 같이 ③, ④항의 사항을 입찰조건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④항의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식당 순이익(임대료 및 초과순이익)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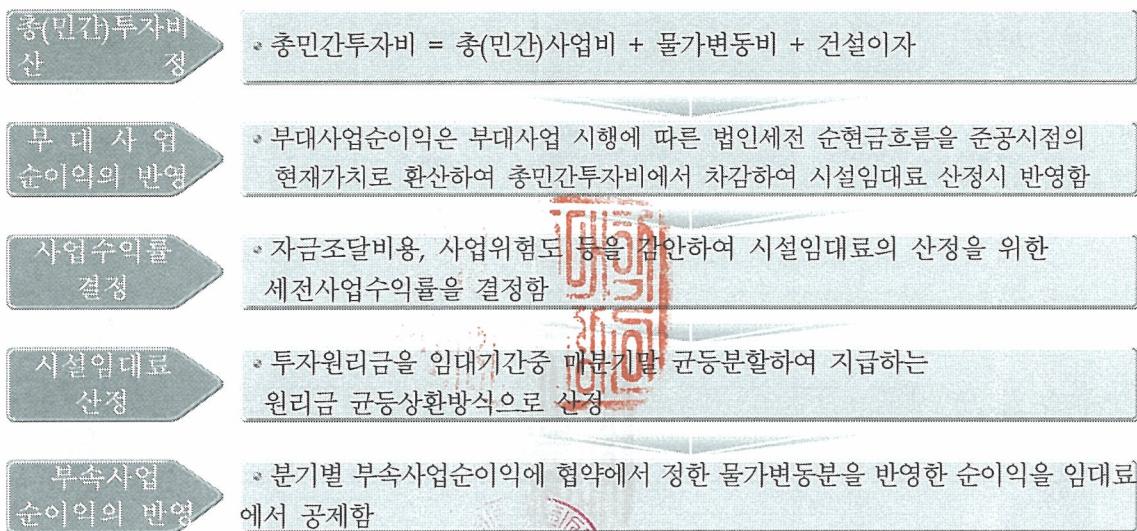


[별표 10]

시설임대료 산정방법

1. 시설 임대료 산정기준

-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2. 시설 임대료 산정식

1) 준공시점 임대료 산정

$$\text{시설임대료} =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times \text{총민간투자비}$$

- 주) 1. 사업수익률(단, 가산율 제외)은 5년마다 재산정한다.
2. 임대기간은 80분기로 적용함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조 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text{조정후 시설
임대료} = \text{잔여 총민간 투자비}^{(주)} \times \frac{\text{조정된 수익률}}{1 - (1 + \text{조정된 수익률})^{-(\text{잔여임대기간})}}$$

주) 잔여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

[별표 11]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미반영시)

- 총괄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2015	1	442	2026	45	650
	2	650		46	650
	3	650		47	650
	4	650		48	650
2016	5	650	2027	49	650
	6	650		50	650
	7	650		51	650
	8	650		52	650
2017	9	650	2028	53	650
	10	650		54	650
	11	650		55	650
	12	650		56	650
2018	13	650	2029	57	650
	14	650		58	650
	15	650		59	650
	16	650		60	650
2019	17	650	2030	61	650
	18	650		62	650
	19	650		63	650
	20	650		64	650
2020	21	650	2031	65	650
	22	650		66	650
	23	650		67	650
	24	650		68	650
2021	25	650	2032	69	650
	26	650		70	650
	27	650		71	650
	28	650		72	650
2022	29	650	2033	73	650
	30	650		74	650
	31	650		75	650
	32	650		76	650
2023	33	650	2034	77	650
	34	650		78	650
	35	650		79	650
	36	650		80	650
2024	37	650	2035	81	208
	38	650			-
	39	650			-
	40	650			-
2025	41	650	총 지급회수	80회	
	42	650	지급회수 평균	650	
	43	650	연 평균	2,602	
	44	650	총계	52,032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미반영시]

- 충남대 대덕캠퍼스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2015	1	276	2026	45	406
	2	406		46	406
	3	406		47	406
	4	406		48	406
2016	5	406	2027	49	406
	6	406		50	406
	7	406		51	406
	8	406		52	406
2017	9	406	2028	53	406
	10	406		54	406
	11	406		55	406
	12	406		56	406
2018	13	406	2029	57	406
	14	406		58	406
	15	406		59	406
	16	406		60	406
2019	17	406	2030	61	406
	18	406		62	406
	19	406		63	406
	20	406		64	406
2020	21	406	2031	65	406
	22	406		66	406
	23	406		67	406
	24	406		68	406
2021	25	406	2032	69	406
	26	406		70	406
	27	406		71	406
	28	406		72	406
2022	29	406	2033	73	406
	30	406		74	406
	31	406		75	406
	32	406		76	406
2023	33	406	2034	77	406
	34	406		78	406
	35	406		79	406
	36	406		80	406
2024	37	406	2035	81	130
	38	406			-
	39	406			-
	40	406			-
2025	41	406	총 지급회수	80회	
	42	406	지급회수 평균	406	
	43	406	연 평균	1,622	
	44	406	총계	32,447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미반영시)

- 충남대 보운캠퍼스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2015	1	55	2026	45	82
	2	82		46	82
	3	82		47	82
	4	82		48	82
2016	5	82	2027	49	82
	6	82		50	82
	7	82		51	82
	8	82		52	82
2017	9	82	2028	53	82
	10	82		54	82
	11	82		55	82
	12	82		56	82
2018	13	82	2029	57	82
	14	82		58	82
	15	82		59	82
	16	82		60	82
2019	17	82	2030	61	82
	18	82		62	82
	19	82		63	82
	20	82		64	82
2020	21	82	2031	65	82
	22	82		66	82
	23	82		67	82
	24	82		68	82
2021	25	82	2032	69	82
	26	82		70	82
	27	82		71	82
	28	82		72	82
2022	29	82	2033	73	82
	30	82		74	82
	31	82		75	82
	32	82		76	82
2023	33	82	2034	77	82
	34	82		78	82
	35	82		79	82
	36	82		80	82
2024	37	82	2035	81	26
	38	82			-
	39	82			-
	40	82			-
2025	41	82	총 지급회수	80회	
	42	82	지급회수 평균	82	
	43	82	연 평균	326	
	44	82	총계	6,527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미반영시)

- 군산대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 (경상기준)
2015	1	111	2026	45	163
	2	163		46	163
	3	163		47	163
	4	163		48	163
2016	5	163	2027	49	163
	6	163		50	163
	7	163		51	163
	8	163		52	163
2017	9	163	2028	53	163
	10	163		54	163
	11	163		55	163
	12	163		56	163
2018	13	163	2029	57	163
	14	163		58	163
	15	163		59	163
	16	163		60	163
2019	17	163	2030	61	163
	18	163		62	163
	19	163		63	163
	20	163		64	163
2020	21	163	2031	65	163
	22	163		66	163
	23	163		67	163
	24	163		68	163
2021	25	163	2032	69	163
	26	163		70	163
	27	163		71	163
	28	163		72	163
2022	29	163	2033	73	163
	30	163		74	163
	31	163		75	163
	32	163		76	163
2023	33	163	2034	77	163
	34	163		78	163
	35	163		79	163
	36	163		80	163
2024	37	163	2035	81	52
	38	163			-
	39	163			-
	40	163			-
2025	41	163	총 지급회수	80회	
	42	163	지급회수 평균	163	
	43	163	연 평균	653	
	44	163	총계	13,058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신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총괄

(금액 단위: 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수익(C)	A+B-C	년도	차수	시설 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수익 (C)	A+B-C
2015	1	442	67	2	508	2026	45	650	137	4	783
	2	650	99	3	747		46	650	138	4	784
	3	650	100	3	748		47	650	139	4	785
	4	650	101	3	749		48	650	140	4	786
2016	5	650	102	3	749	2027	49	650	141	4	787
	6	650	102	3	750		50	650	142	4	788
	7	650	103	3	751		51	650	143	4	789
	8	650	104	3	751		52	650	144	4	790
2017	9	650	105	3	752	2028	53	650	145	4	791
	10	650	106	3	753		54	650	146	4	792
	11	650	106	3	754		55	650	147	4	794
	12	650	107	3	755		56	650	148	4	795
2018	13	650	108	3	755	2029	57	650	149	4	796
	14	650	109	3	756		58	650	150	4	797
	15	650	109	3	757		59	650	152	4	798
	16	650	110	3	758		60	650	153	4	799
2019	17	650	111	3	758	2030	61	650	154	4	800
	18	650	112	3	759		62	650	155	4	801
	19	650	113	3	760		63	650	156	4	802
	20	650	114	3	761		64	650	157	4	803
2020	21	650	114	3	762	2031	65	650	158	4	804
	22	650	115	3	763		66	650	160	4	806
	23	650	116	3	763		67	650	161	4	807
	24	650	117	3	764		68	650	162	5	808
2021	25	650	118	3	765	2032	69	650	163	5	809
	26	650	119	3	766		70	650	164	5	810
	27	650	120	3	767		71	650	166	5	811
	28	650	121	3	768		72	650	167	5	813
2022	29	650	121	3	768	2033	73	650	168	5	814
	30	650	122	3	769		74	650	169	5	815
	31	650	123	3	770		75	650	171	5	816
	32	650	124	3	771		76	650	172	5	818
2023	33	650	125	3	772	2034	77	650	173	5	819
	34	650	126	4	773		78	650	174	5	820
	35	650	127	4	774		79	650	176	5	821
	36	650	128	4	775		80	650	177	5	823
2024	37	650	129	4	776	2035	81	208	57	2	264
	38	650	130	4	777			-	-	-	-
	39	650	131	4	778			-	-	-	-
	40	650	132	4	778			-	-	-	-
2025	41	650	133	4	779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42	650	134	4	780	지급회수평균	650	134	4	781	
	43	650	135	4	781	연평균	2,602	538	15	3,125	
	44	650	136	4	782	총계	52,032	10,758	299	62,491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충남대 대덕캠퍼스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순이익(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순이익(C)	A+B-C
2015	1	276	41	1.8	315	2026	45	406	84	3.7	486
	2	406	61	2.7	464		46	406	85	3.7	487
	3	406	62	2.7	465		47	406	86	3.7	487
	4	406	62	2.7	465		48	406	86	3.7	488
2016	5	406	63	2.7	466	2027	49	406	87	3.8	489
	6	406	63	2.7	466		50	406	87	3.8	489
	7	406	64	2.8	466		51	406	88	3.8	490
	8	406	64	2.8	467		52	406	89	3.9	491
2017	9	406	65	2.8	467	2028	53	406	89	3.9	491
	10	406	65	2.8	468		54	406	90	3.9	492
	11	406	66	2.8	468		55	406	91	3.9	492
	12	406	66	2.9	469		56	406	91	4.0	493
2018	13	406	67	2.9	469	2029	57	406	92	4.0	494
	14	406	67	2.9	470		58	406	93	4.0	494
	15	406	68	2.9	470		59	406	93	4.1	495
	16	406	68	3.0	471		60	406	94	4.1	496
2019	17	406	69	3.0	471	2030	61	406	95	4.1	496
	18	406	69	3.0	472		62	406	96	4.1	497
	19	406	70	3.0	472		63	406	96	4.2	498
	20	406	70	3.0	473		64	406	97	4.2	498
2020	21	406	71	3.1	473	2031	65	406	98	4.2	499
	22	406	71	3.1	474		66	406	98	4.3	500
	23	406	72	3.1	474		67	406	99	4.3	500
	24	406	72	3.1	475		68	406	100	4.3	501
2021	25	406	73	3.2	475	2032	69	406	101	4.4	502
	26	406	73	3.2	476		70	406	101	4.4	503
	27	406	74	3.2	476		71	406	102	4.4	503
	28	406	74	3.2	477		72	406	103	4.5	504
2022	29	406	75	3.2	477	2033	73	406	104	4.5	505
	30	406	75	3.3	478		74	406	104	4.5	505
	31	406	76	3.3	478		75	406	105	4.6	506
	32	406	77	3.3	479		76	406	106	4.6	507
2023	33	406	77	3.3	479	2034	77	406	107	4.6	508
	34	406	78	3.4	480		78	406	108	4.7	508
	35	406	78	3.4	480		79	406	108	4.7	509
	36	406	79	3.4	481		80	406	109	4.7	510
2024	37	406	79	3.4	482	2035	81	130	35	1.5	163
	38	406	80	3.5	482			-	-	-	-
	39	406	81	3.5	483			-	-	-	-
	40	406	81	3.5	483			-	-	-	-
2025	41	406	82	3.5	484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80회
	42	406	82	3.6	484	지급회수평균	406	83	4	485	
	43	406	83	3.6	485	연평균	1,622	332	14	1,940	
	44	406	84	3.6	486	총계	32,447	6,634	288	38,793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신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충남대 보운캠퍼스

(금액 단위: 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수익(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수익(C)	A+B-C
2015	1	55	9	0.1	65	2026	45	82	19	0.1	100
	2	82	14	0.1	95		46	82	19	0.1	100
	3	82	14	0.1	95		47	82	19	0.1	100
	4	82	14	0.1	95		48	82	19	0.1	101
2016	5	82	14	0.1	95	2027	49	82	19	0.2	101
	6	82	14	0.1	96		50	82	19	0.2	101
	7	82	14	0.1	96		51	82	20	0.2	101
	8	82	14	0.1	96		52	82	20	0.2	101
2017	9	82	14	0.1	96	2028	53	82	20	0.2	101
	10	82	14	0.1	96		54	82	20	0.2	101
	11	82	15	0.1	96		55	82	20	0.2	102
	12	82	15	0.1	96		56	82	20	0.2	102
2018	13	82	15	0.1	96	2029	57	82	20	0.2	102
	14	82	15	0.1	96		58	82	21	0.2	102
	15	82	15	0.1	96		59	82	21	0.2	102
	16	82	15	0.1	97		60	82	21	0.2	102
2019	17	82	15	0.1	97	2030	61	82	21	0.2	103
	18	82	15	0.1	97		62	82	21	0.2	103
	19	82	15	0.1	97		63	82	21	0.2	103
	20	82	16	0.1	97		64	82	22	0.2	103
2020	21	82	16	0.1	97	2031	65	82	22	0.2	103
	22	82	16	0.1	97		66	82	22	0.2	103
	23	82	16	0.1	97		67	82	22	0.2	103
	24	82	16	0.1	98		68	82	22	0.2	104
2021	25	82	16	0.1	98	2032	69	82	22	0.2	104
	26	82	16	0.1	98		70	82	23	0.2	104
	27	82	16	0.1	98		71	82	23	0.2	104
	28	82	17	0.1	98		72	82	23	0.2	104
2022	29	82	17	0.1	98	2033	73	82	23	0.2	104
	30	82	17	0.1	98		74	82	23	0.2	105
	31	82	17	0.1	98		75	82	23	0.2	105
	32	82	17	0.1	98		76	82	24	0.2	105
2023	33	82	17	0.1	99	2034	77	82	24	0.2	105
	34	82	17	0.1	99		78	82	24	0.2	105
	35	82	17	0.1	99		79	82	24	0.2	106
	36	82	18	0.1	99		80	82	24	0.2	106
2024	37	82	18	0.1	99	2035	81	26	8	0.1	34
	38	82	18	0.1	99			-	-	-	-
	39	82	18	0.1	99			-	-	-	-
	40	82	18	0.1	100			-	-	-	-
2025	41	82	18	0.1	100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80회
	42	82	18	0.1	100	지급회수평균	82	18	0	100	
	43	82	18	0.1	100	연평균	326	74	1	400	
	44	82	19	0.1	100	총계	6,527	1,475	11	7,991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군산대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수익(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수익 (C)	A+B-C
2015	1	111	17	-	128	2026	45	163	34	-	197
	2	163	24	-	188		46	163	34	-	197
	3	163	25	-	188		47	163	34	-	197
	4	163	25	-	188		48	163	34	-	198
2016	5	163	25	-	188	2027	49	163	35	-	198
	6	163	25	-	188		50	163	35	-	198
	7	163	25	-	189		51	163	35	-	198
	8	163	26	-	189		52	163	35	-	199
2017	9	163	26	-	189	2028	53	163	36	-	199
	10	163	26	-	189		54	163	36	-	199
	11	163	26	-	189		55	163	36	-	199
	12	163	26	-	190		56	163	37	-	200
2018	13	163	27	-	190	2029	57	163	37	-	200
	14	163	27	-	190		58	163	37	-	200
	15	163	27	-	190		59	163	37	-	201
	16	163	27	-	190		60	163	38	-	201
2019	17	163	27	-	191	2030	61	163	38	-	201
	18	163	28	-	191		62	163	38	-	201
	19	163	28	-	191		63	163	38	-	202
	20	163	28	-	191		64	163	39	-	202
2020	21	163	28	-	191	2031	65	163	39	-	202
	22	163	28	-	192		66	163	39	-	203
	23	163	29	-	192		67	163	40	-	203
	24	163	29	-	192		68	163	40	-	203
2021	25	163	29	-	192	2032	69	163	40	-	203
	26	163	29	-	192		70	163	40	-	204
	27	163	29	-	193		71	163	41	-	204
	28	163	30	-	193		72	163	41	-	204
2022	29	163	30	-	193	2033	73	163	41	-	205
	30	163	30	-	193		74	163	42	-	205
	31	163	30	-	194		75	163	42	-	205
	32	163	31	-	194		76	163	42	-	206
2023	33	163	31	-	194	2034	77	163	43	-	206
	34	163	31	-	194		78	163	43	-	206
	35	163	31	-	194		79	163	43	-	207
	36	163	31	-	195		80	163	44	-	207
2024	37	163	32	-	195	2035	81	52	14	-	66
	38	163	32	-	195			-	-	-	-
	39	163	32	-	195			-	-	-	-
	40	163	32	-	196			-	-	-	-
2025	41	163	33	-	196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42	163	33	-	196	지급회수평균	163	33	-	196	
	43	163	33	-	196	연평균	653	132	-	785	
	44	163	33	-	197	총계	13,058	2,649	-	15,708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총괄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C)	A+B-C
2015	1	409	62	2	469	2026	45	434	91	3	523
	2	597	91	3	685		46	431	91	3	520
	3	592	91	3	681		47	428	91	3	517
	4	588	91	3	677		48	425	91	3	513
2016	5	584	91	3	672	2027	49	422	91	3	510
	6	579	91	3	668		50	418	91	3	507
	7	575	91	3	664		51	415	91	3	504
	8	571	91	3	659		52	412	91	3	501
2017	9	567	91	3	655	2028	53	409	91	3	498
	10	562	91	3	651		54	406	91	3	495
	11	558	91	3	647		55	403	91	3	492
	12	554	91	3	643		56	400	91	3	489
2018	13	550	91	3	639	2029	57	397	91	3	486
	14	546	91	3	635		58	394	91	3	483
	15	542	91	3	631		59	391	91	3	480
	16	538	91	3	627		60	389	91	3	477
2019	17	534	91	3	623	2030	61	386	91	3	474
	18	530	91	3	619		62	383	91	3	472
	19	526	91	3	615		63	380	91	3	469
	20	522	91	3	611		64	377	91	3	466
2020	21	518	91	3	607	2031	65	375	91	3	463
	22	515	91	3	603		66	372	91	3	460
	23	511	91	3	600		67	369	91	3	458
	24	507	91	3	596		68	366	91	3	455
2021	25	503	91	3	592	2032	69	364	91	3	452
	26	500	91	3	588		70	361	91	3	450
	27	496	91	3	585		71	358	91	3	447
	28	492	91	3	581		72	356	91	3	444
2022	29	489	91	3	577	2033	73	353	91	3	442
	30	485	91	3	574		74	350	91	3	439
	31	482	91	3	570		75	348	91	3	437
	32	478	91	3	567		76	345	91	3	434
2023	33	474	91	3	563	2034	77	343	91	3	431
	34	471	91	3	560		78	340	91	3	429
	35	468	91	3	556		79	338	91	3	426
	36	464	91	3	553		80	335	91	3	424
2024	37	461	91	3	549	2035	81	106	29	1	135
	38	457	91	3	546			-	-	-	-
	39	454	91	3	543			-	-	-	-
	40	450	91	3	539			-	-	-	-
2025	41	447	91	3	536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80회
	42	444	91	3	533	지급회수평균	454	91	3	543	
	43	441	91	3	529	연평균	1,817	365	10	2,172	
	44	437	91	3	526	총계	36,350	7,300	203	43,446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충남대 대덕캠퍼스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 비 (B)	부속사업 부수회(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부수회(C)	A+B-C
2015	1	255	38	1.7	292	2026	45	271	56	2.4	325
	2	372	56	2.4	426		46	269	56	2.4	323
	3	369	56	2.4	423		47	267	56	2.4	321
	4	367	56	2.4	420		48	265	56	2.4	319
2016	5	364	56	2.4	418	2027	49	263	56	2.4	317
	6	361	56	2.4	415		50	261	56	2.4	315
	7	359	56	2.4	412		51	259	56	2.4	313
	8	356	56	2.4	410		52	257	56	2.4	311
2017	9	353	56	2.4	407	2028	53	255	56	2.4	309
	10	351	56	2.4	405		54	253	56	2.4	307
	11	348	56	2.4	402		55	251	56	2.4	305
	12	346	56	2.4	399		56	250	56	2.4	303
2018	13	343	56	2.4	397	2029	57	248	56	2.4	302
	14	341	56	2.4	394		58	246	56	2.4	300
	15	338	56	2.4	392		59	244	56	2.4	298
	16	335	56	2.4	389		60	242	56	2.4	296
2019	17	333	56	2.4	387	2030	61	241	56	2.4	294
	18	331	56	2.4	384		62	239	56	2.4	293
	19	328	56	2.4	382		63	237	56	2.4	291
	20	326	56	2.4	380		64	235	56	2.4	289
2020	21	323	56	2.4	377	2031	65	234	56	2.4	287
	22	321	56	2.4	375		66	232	56	2.4	286
	23	319	56	2.4	372		67	230	56	2.4	284
	24	316	56	2.4	370		68	228	56	2.4	282
2021	25	314	56	2.4	368	2032	69	227	56	2.4	281
	26	312	56	2.4	365		70	225	56	2.4	279
	27	309	56	2.4	363		71	223	56	2.4	277
	28	307	56	2.4	361		72	222	56	2.4	276
2022	29	305	56	2.4	359	2033	73	220	56	2.4	274
	30	303	56	2.4	356		74	218	56	2.4	272
	31	300	56	2.4	354		75	217	56	2.4	271
	32	298	56	2.4	352		76	215	56	2.4	269
2023	33	296	56	2.4	350	2034	77	214	56	2.4	268
	34	294	56	2.4	348		78	212	56	2.4	266
	35	292	56	2.4	345		79	211	56	2.4	264
	36	289	56	2.4	343		80	209	56	2.4	263
2024	37	287	56	2.4	341	2035	81	66	18	0.8	84
	38	285	56	2.4	339			-	-	-	-
	39	283	56	2.4	337			-	-	-	-
	40	281	56	2.4	335			-	-	-	-
2025	41	279	56	2.4	333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42	277	56	2.4	331	지급회수평균	283	56	2	337	
	43	275	56	2.4	329	연평균	1,133	225	10	1,349	
	44	273	56	2.4	327	총계	22,667	4,501	195	26,973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충남대 보운캠퍼스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수익(C)	A+B-C	년도	차수	시설 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수익 (C)	A+B-C
2015	1	51	9	0.1	60	2026	45	54	13	0.1	67
	2	75	13	0.1	87		46	54	13	0.1	66
	3	74	13	0.1	87		47	54	13	0.1	66
	4	74	13	0.1	86		48	53	13	0.1	66
2016	5	73	13	0.1	86	2027	49	53	13	0.1	65
	6	73	13	0.1	85		50	52	13	0.1	65
	7	72	13	0.1	85		51	52	13	0.1	65
	8	72	13	0.1	84		52	52	13	0.1	64
2017	9	71	13	0.1	83	2028	53	51	13	0.1	64
	10	71	13	0.1	83		54	51	13	0.1	63
	11	70	13	0.1	82		55	51	13	0.1	63
	12	70	13	0.1	82		56	50	13	0.1	63
2018	13	69	13	0.1	81	2029	57	50	13	0.1	62
	14	69	13	0.1	81		58	49	13	0.1	62
	15	68	13	0.1	80		59	49	13	0.1	62
	16	67	13	0.1	80		60	49	13	0.1	61
2019	17	67	13	0.1	79	2030	61	48	13	0.1	61
	18	67	13	0.1	79		62	48	13	0.1	60
	19	66	13	0.1	78		63	48	13	0.1	60
	20	66	13	0.1	78		64	47	13	0.1	60
2020	21	65	13	0.1	77	2031	65	47	13	0.1	59
	22	65	13	0.1	77		66	47	13	0.1	59
	23	64	13	0.1	76		67	46	13	0.1	59
	24	64	13	0.1	76		68	46	13	0.1	58
2021	25	63	13	0.1	76	2032	69	46	13	0.1	58
	26	63	13	0.1	75		70	45	13	0.1	58
	27	62	13	0.1	75		71	45	13	0.1	57
	28	62	13	0.1	74		72	45	13	0.1	57
2022	29	61	13	0.1	74	2033	73	44	13	0.1	57
	30	61	13	0.1	73		74	44	13	0.1	56
	31	60	13	0.1	73		75	44	13	0.1	56
	32	60	13	0.1	72		76	43	13	0.1	56
2023	33	60	13	0.1	72	2034	77	43	13	0.1	55
	34	59	13	0.1	71		78	43	13	0.1	55
	35	59	13	0.1	71		79	42	13	0.1	55
	36	58	13	0.1	71		80	42	13	0.1	54
2024	37	58	13	0.1	70	2035	81	13	4	0.0	17
	38	57	13	0.1	70		-	-	-	-	-
	39	57	13	0.1	69		-	-	-	-	-
	40	57	13	0.1	69		-	-	-	-	-
2025	41	56	13	0.1	69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80회
	42	56	13	0.1	68	지급회수평균	57	13	0	69	
	43	55	13	0.1	68	연평균	228	50	0	278	
	44	55	13	0.1	67	총계	4,560	1,001	8	5,553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 및 지급계획

[부속사업 순이익 반영시]

- 군산대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년도	차수	시설 임대료 (A)	운영비 (B)	부속사업 수익(C)	A+B-C	년도	차수	시설임대 료(A)	운영비(B)	부속사업 수익 (C)	A+B-C
2015	1	103	15	-	118	2026	45	109	22	-	131
	2	150	22	-	172		46	108	22	-	131
	3	149	22	-	171		47	107	22	-	130
	4	148	22	-	170		48	107	22	-	129
2016	5	146	22	-	169	2027	49	106	22	-	128
	6	145	22	-	168		50	105	22	-	127
	7	144	22	-	167		51	104	22	-	127
	8	143	22	-	166		52	103	22	-	126
2017	9	142	22	-	165	2028	53	103	22	-	125
	10	141	22	-	164		54	102	22	-	124
	11	140	22	-	163		55	101	22	-	124
	12	139	22	-	162		56	100	22	-	123
2018	13	138	22	-	161	2029	57	100	22	-	122
	14	137	22	-	160		58	99	22	-	121
	15	136	22	-	158		59	98	22	-	121
	16	135	22	-	157		60	98	22	-	120
2019	17	134	22	-	157	2030	61	97	22	-	119
	18	133	22	-	156		62	96	22	-	119
	19	132	22	-	155		63	95	22	-	118
	20	131	22	-	154		64	95	22	-	117
2020	21	130	22	-	153	2031	65	94	22	-	116
	22	129	22	-	152		66	93	22	-	116
	23	128	22	-	151		67	93	22	-	115
	24	127	22	-	150		68	92	22	-	114
2021	25	126	22	-	149	2032	69	91	22	-	114
	26	125	22	-	148		70	91	22	-	113
	27	124	22	-	147		71	90	22	-	112
	28	124	22	-	146		72	89	22	-	112
2022	29	123	22	-	145	2033	73	89	22	-	111
	30	122	22	-	144		74	88	22	-	110
	31	121	22	-	143		75	87	22	-	110
	32	120	22	-	142		76	87	22	-	109
2023	33	119	22	-	142	2034	77	86	22	-	108
	34	118	22	-	141		78	85	22	-	108
	35	117	22	-	140		79	85	22	-	107
	36	116	22	-	139		80	84	22	-	107
2024	37	116	22	-	138	2035	81	27	7	-	34
	38	115	22	-	137			-	-	-	-
	39	114	22	-	136			-	-	-	-
	40	113	22	-	136			-	-	-	-
2025	41	112	22	-	135	총지급회수	80회	80회	80회	80회	80회
	42	111	22	-	134	지급회수평균	114	22	-	137	
	43	111	22	-	133	연평균	456	90	-	546	
	44	110	22	-	132	총계	9,122	1,798	-	10,920	

※ 시설임대료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시설임대료의 적립

(금액단위:백만원, VAT 제외, 경상기준)

년도	차수	시설임대료(A)	적립금
2015	1	2,393	20
2016	2	2,602	20
2017	3	2,602	20

1) 적립금액

- 연간 20백만원 (일시적립)
- 적립시점 : 준공정산 완료 후 관리운영권 설정시
- 매년초 전년도의 미사용잔액 회수가능 (미회수시 미회수금액만큼을 당해년도 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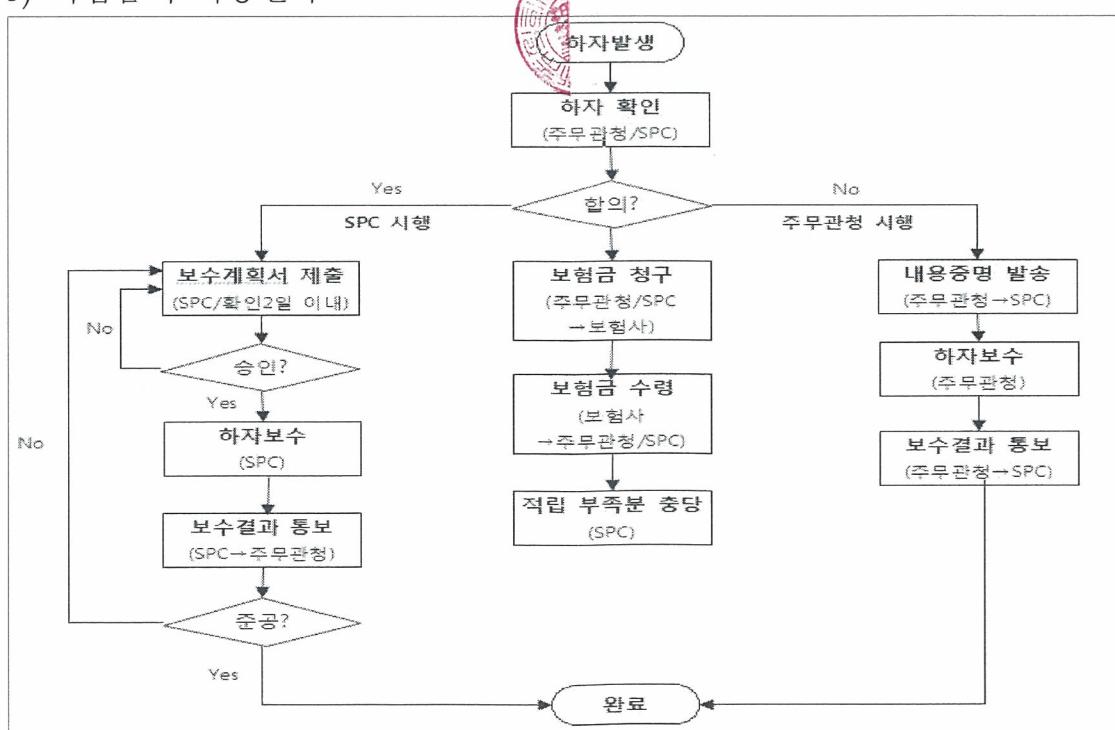
2) 적립기간 : 운영개시후부터 4년간

3) 적립계좌 : 사업시행자 계좌(수선충당금과 동일하게 관리)

4) 적립금의 사용

- 하자보증금 우선 사용하되 시일 초과시 적립금으로 선치유하고 하자보증금 수령액을 적립
- 하자기간 종료되는 공종에는 적립금 사용 불가
- 하자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상호합의로 결정함. 합의 안 될 경우 제3자에게 의뢰
- 하자보수 업체는 사업자가 선정하되 사업자가 미이행 시 주무관청이 선정

5) 적립금의 사용절차



[별표 12]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

- 총괄

1. 운영비의 구성 : 운영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금액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인건비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	안전 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연평균	12	305	126	51	-	25	13	90
년번	합계	240	6,101	2,514	1,024	-	500	265	1,798
1	2015	11.04	281	116	47	-	23	12	83
2	2016	12	305	126	51	-	25	13	90
3	2017	12	305	126	51	-	25	13	90
4	2018	12	305	126	51	-	25	13	90
5	2019	12	305	126	51	-	25	13	90
6	2020	12	305	126	51	-	25	13	90
7	2021	12	305	126	51	-	25	13	90
8	2022	12	305	126	51	-	25	13	90
9	2023	12	305	126	51	-	25	13	90
10	2024	12	305	126	51	-	25	13	90
11	2025	12	305	126	51	-	25	13	90
12	2026	12	305	126	51	-	25	13	90
13	2027	12	305	126	51	-	25	13	90
14	2028	12	305	126	51	-	25	13	90
15	2029	12	305	126	51	-	25	13	90
16	2030	12	305	126	51	-	25	13	90
17	2031	12	305	126	51	-	25	13	90
18	2032	12	305	126	51	-	25	13	90
19	2033	12	305	126	51	-	25	13	90
20	2034	12	305	126	51	-	25	13	90
21	2035	0.96	24	10	4	-	2	1	7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 운영관리비는 부록4 실무협상 합의사항에 따라 적용됨.

2. 운영비의 구성 : 유지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유지 보수비	교체비
	연평균	12	60	60
년번	합계	240	1,199	1,199
1	2015	11.04	55	55
2	2016	12	60	60
3	2017	12	60	60
4	2018	12	60	60
5	2019	12	60	60
6	2020	12	60	60
7	2021	12	60	60
8	2022	12	60	60
9	2023	12	60	60
10	2024	12	60	60
11	2025	12	60	60
12	2026	12	60	60
13	2027	12	60	60
14	2028	12	60	60
15	2029	12	60	60
16	2030	12	60	60
17	2031	12	60	60
18	2032	12	60	60
19	2033	12	60	60
20	2034	12	60	60
21	2035	0.96	5	5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 유지관리비는 부록4 실무협상 합의사항에 따라 적용됨.

3. 운영비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2015	1	67	62	2026	45	137	91
	2	99	91		46	138	91
	3	100	91		47	139	91
	4	101	91		48	140	91
2016	5	102	91	2027	49	141	91
	6	102	91		50	142	91
	7	103	91		51	143	91
	8	104	91		52	144	91
2017	9	105	91	2028	53	145	91
	10	106	91		54	146	91
	11	106	91		55	147	91
	12	107	91		56	148	91
2018	13	108	91	2029	57	149	91
	14	109	91		58	150	91
	15	109	91		59	152	91
	16	110	91		60	153	91
2019	17	111	91	2030	61	154	91
	18	112	91		62	155	91
	19	113	91		63	156	91
	20	114	91		64	157	91
2020	21	114	91	2031	65	158	91
	22	115	91		66	160	91
	23	116	91		67	161	91
	24	117	91		68	162	91
2021	25	118	91	2032	69	163	91
	26	119	91		70	164	91
	27	120	91		71	166	91
	28	121	91		72	167	91
2022	29	121	91	2033	73	168	91
	30	122	91		74	169	91
	31	123	91		75	171	91
	32	124	91		76	172	91
2023	33	125	91	2034	77	173	91
	34	126	91		78	174	91
	35	127	91		79	176	91
	36	128	91		80	177	91
2024	37	129	91	2035	81	57	29
	38	130	91			-	-
	39	131	91			-	-
	40	132	91			-	-
2025	41	133	91	총 지급회수	80회	80회	
	42	134	91	지급회수평균	134	91	
	43	135	91	연평균	538	365	
	44	136	91	총 계	10,758	7,300	

* 운영비 지급관련 민간투자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수선충당금 적립 일정

(단위: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2015	1	10	2026	45	15
	2	15		46	15
	3	15		47	15
	4	15		48	15
2016	5	15	2027	49	15
	6	15		50	15
	7	15		51	15
	8	15		52	15
2017	9	15	2028	53	15
	10	15		54	15
	11	15		55	15
	12	15		56	15
2018	13	15	2029	57	15
	14	15		58	15
	15	15		59	15
	16	15		60	15
2019	17	15	2030	61	15
	18	15		62	15
	19	15		63	15
	20	15		64	15
2020	21	15	2031	65	15
	22	15		66	15
	23	15		67	15
	24	15		68	15
2021	25	15	2032	69	15
	26	15		70	15
	27	15		71	15
	28	15		72	15
2022	29	15	2033	73	15
	30	15		74	15
	31	15		75	15
	32	15		76	15
2023	33	15	2034	77	15
	34	15		78	15
	35	15		79	15
	36	15		80	15
2024	37	15	2035	81	5
	38	15			
	39	15			
	40	15			
2025	41	15			
	42	15			
	43	15			
	44	15			
총 지급회수					80회
총 계					1,199

※ 비고

- 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 계좌로 관리하되 해당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 수선충당금 사용 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수선비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방식 및 사용금액에 대해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관리운영권 종료 시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

- 충남대 대덕캠퍼스

1. 운영비의 구성 : 운영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금액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인건비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	안전 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연평균	12	189	89	26	-	13	8	52
년번	합계	240	3,779	1,787	525	-	260	166	1,041
1	2015	11.04	174	82	24	-	12	8	48
2	2016	12	189	89	26	-	13	8	52
3	2017	12	189	89	26	-	13	8	52
4	2018	12	189	89	26	-	13	8	52
5	2019	12	189	89	26	-	13	8	52
6	2020	12	189	89	26	-	13	8	52
7	2021	12	189	89	26	-	13	8	52
8	2022	12	189	89	26	-	13	8	52
9	2023	12	189	89	26	-	13	8	52
10	2024	12	189	89	26	-	13	8	52
11	2025	12	189	89	26	-	13	8	52
12	2026	12	189	89	26	-	13	8	52
13	2027	12	189	89	26	-	13	8	52
14	2028	12	189	89	26	-	13	8	52
15	2029	12	189	89	26	-	13	8	52
16	2030	12	189	89	26	-	13	8	52
17	2031	12	189	89	26	-	13	8	52
18	2032	12	189	89	26	-	13	8	52
19	2033	12	189	89	26	-	13	8	52
20	2034	12	189	89	26	-	13	8	52
21	2035	0.96	15	7	2	-	1	1	4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2. 운영비의 구성 : 유지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유지 보수비	교체비
	연평균	12	36	-
년번	합계	240	723	-
1	2015	11.04	33	-
2	2016	12	36	-
3	2017	12	36	-
4	2018	12	36	-
5	2019	12	36	-
6	2020	12	36	-
7	2021	12	36	-
8	2022	12	36	-
9	2023	12	36	-
10	2024	12	36	-
11	2025	12	36	-
12	2026	12	36	-
13	2027	12	36	-
14	2028	12	36	-
15	2029	12	36	-
16	2030	12	36	-
17	2031	12	36	-
18	2032	12	36	-
19	2033	12	36	-
20	2034	12	36	-
21	2035	0.96	3	-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3. 운영비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2015	1	41	38	2026	45	84	56
	2	61	56		46	85	56
	3	62	56		47	86	56
	4	62	56		48	86	56
2016	5	63	56	2027	49	87	56
	6	63	56		50	87	56
	7	64	56		51	88	56
	8	64	56		52	89	56
2017	9	65	56	2028	53	89	56
	10	65	56		54	90	56
	11	66	56		55	91	56
	12	66	56		56	91	56
2018	13	67	56	2029	57	92	56
	14	67	56		58	93	56
	15	68	56		59	93	56
	16	68	56		60	94	56
2019	17	69	56	2030	61	95	56
	18	69	56		62	96	56
	19	70	56		63	96	56
	20	70	56		64	97	56
2020	21	71	56	2031	65	98	56
	22	71	56		66	98	56
	23	72	56		67	99	56
	24	72	56		68	100	56
2021	25	73	56	2032	69	101	56
	26	73	56		70	101	56
	27	74	56		71	102	56
	28	74	56		72	103	56
2022	29	75	56	2033	73	104	56
	30	75	56		74	104	56
	31	76	56		75	105	56
	32	77	56		76	106	56
2023	33	77	56	2034	77	107	56
	34	78	56		78	108	56
	35	78	56		79	108	56
	36	79	56		80	109	56
2024	37	79	56	2035	81	35	18
	38	80	56			-	-
	39	81	56			-	-
	40	81	56			-	-
2025	41	82	56	총 지급회수	80회	80회	
	42	82	56	지급회수평균	83	56	
	43	83	56	연평균	332	225	
	44	84	56	총 계	6,634	4,501	

※ 운영비 지급관련 민간투자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수선충당금 적립 일정

(단위: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2015	1	6	2026	45	9
	2	9		46	9
	3	9		47	9
	4	9		48	9
2016	5	9	2027	49	9
	6	9		50	9
	7	9		51	9
	8	9		52	9
2017	9	9	2028	53	9
	10	9		54	9
	11	9		55	9
	12	9		56	9
2018	13	9	2029	57	9
	14	9		58	9
	15	9		59	9
	16	9		60	9
2019	17	9	2030	61	9
	18	9		62	9
	19	9		63	9
	20	9		64	9
2020	21	9	2031	65	9
	22	9		66	9
	23	9		67	9
	24	9		68	9
2021	25	9	2032	69	9
	26	9		70	9
	27	9		71	9
	28	9		72	9
2022	29	9	2033	73	9
	30	9		74	9
	31	9		75	9
	32	9		76	9
2023	33	9	2034	77	9
	34	9		78	9
	35	9		79	9
	36	9		80	9
2024	37	9	2035	81	3
	38	9			
	39	9			
	40	9			
2025	41	9			
	42	9			
	43	9			
	44	9			
총 지급회수				80회	
총 계				723	

※ 비고

- 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 계좌로 관리하되 해당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 수선충당금 사용 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수선비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방식 및 사용금액에 대해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관리운영권 종료 시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

- 충남대 보운캠퍼스

1. 운영비의 구성 : 운영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금액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인건비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	안전 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연평균	12	41	8	12	-	4	2	16
년번	합계	240	829	154	244	-	76	33	321
1	2015	11.04	38	7	11	-	4	2	15
2	2016	12	41	8	12	-	4	2	16
3	2017	12	41	8	12	-	4	2	16
4	2018	12	41	8	12	-	4	2	16
5	2019	12	41	8	12	-	4	2	16
6	2020	12	41	8	12	-	4	2	16
7	2021	12	41	8	12	-	4	2	16
8	2022	12	41	8	12	-	4	2	16
9	2023	12	41	8	12	-	4	2	16
10	2024	12	41	8	12	-	4	2	16
11	2025	12	41	8	12	-	4	2	16
12	2026	12	41	8	12	-	4	2	16
13	2027	12	41	8	12	-	4	2	16
14	2028	12	41	8	12	-	4	2	16
15	2029	12	41	8	12	-	4	2	16
16	2030	12	41	8	12	-	4	2	16
17	2031	12	41	8	12	-	4	2	16
18	2032	12	41	8	12	-	4	2	16
19	2033	12	41	8	12	-	4	2	16
20	2034	12	41	8	12	-	4	2	16
21	2035	0.96	3	1	1	-	0	0	1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2. 운영비의 구성 : 유지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유지 보수비	교체비
	연평균	12	9	9	-
년변	합계	240	172	172	-
1	2015	11.04	8	8	-
2	2016	12	9	9	-
3	2017	12	9	9	-
4	2018	12	9	9	-
5	2019	12	9	9	-
6	2020	12	9	9	-
7	2021	12	9	9	-
8	2022	12	9	9	-
9	2023	12	9	9	-
10	2024	12	9	9	-
11	2025	12	9	9	-
12	2026	12	9	9	-
13	2027	12	9	9	-
14	2028	12	9	9	-
15	2029	12	9	9	-
16	2030	12	9	9	-
17	2031	12	9	9	-
18	2032	12	9	9	-
19	2033	12	9	9	-
20	2034	12	9	9	-
21	2035	0.96	1	1	-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3. 운영비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2015	1	9	9	2026	45	19	13
	2	14	13		46	19	13
	3	14	13		47	19	13
	4	14	13		48	19	13
2016	5	14	13	2027	49	19	13
	6	14	13		50	19	13
	7	14	13		51	20	13
	8	14	13		52	20	13
2017	9	14	13	2028	53	20	13
	10	14	13		54	20	13
	11	15	13		55	20	13
	12	15	13		56	20	13
2018	13	15	13	2029	57	20	13
	14	15	13		58	21	13
	15	15	13		59	21	13
	16	15	13		60	21	13
2019	17	15	13	2030	61	21	13
	18	15	13		62	21	13
	19	15	13		63	21	13
	20	16	13		64	22	13
2020	21	16	13	2031	65	22	13
	22	16	13		66	22	13
	23	16	13		67	22	13
	24	16	13		68	22	13
2021	25	16	13	2032	69	22	13
	26	16	13		70	23	13
	27	16	13		71	23	13
	28	17	13		72	23	13
2022	29	17	13	2033	73	23	13
	30	17	13		74	23	13
	31	17	13		75	23	13
	32	17	13		76	24	13
2023	33	17	13	2034	77	24	13
	34	17	13		78	24	13
	35	17	13		79	24	13
	36	18	13		80	24	13
2024	37	18	13	2035	81	8	4
	38	18	13			-	-
	39	18	13			-	-
	40	18	13			-	-
2025	41	18	13	총 지급회수	80회	80회	
	42	18	13	지급회수평균	18	13	
	43	18	13	연평균	74	50	
	44	19	13	총 계	1,475	1,001	

* 운영비 지급관련 민간투자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수선충당금 적립 일정

(단위: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2015	1	1	2026	45	2
	2	2		46	2
	3	2		47	2
	4	2		48	2
2016	5	2	2027	49	2
	6	2		50	2
	7	2		51	2
	8	2		52	2
2017	9	2	2028	53	2
	10	2		54	2
	11	2		55	2
	12	2		56	2
2018	13	2	2029	57	2
	14	2		58	2
	15	2		59	2
	16	2		60	2
2019	17	2	2030	61	2
	18	2		62	2
	19	2		63	2
	20	2		64	2
2020	21	2	2031	65	2
	22	2		66	2
	23	2		67	2
	24	2		68	2
2021	25	2	2032	69	2
	26	2		70	2
	27	2		71	2
	28	2		72	2
2022	29	2	2033	73	2
	30	2		74	2
	31	2		75	2
	32	2		76	2
2023	33	2	2034	77	2
	34	2		78	2
	35	2		79	2
	36	2		80	2
2024	37	2	2035	81	1
	38	2			
	39	2			
	40	2			
2025	41	2			
	42	2			
	43	2			
	44	2			
총 지급회수			80회		
총 계			172		

※ 비고

- 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 계좌로 관리하되 해당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 수선충당금 사용 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수선비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방식 및 사용금액에 대해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관리운영권 종료 시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계획

- 군산대

1. 운영비의 구성 : 운영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금액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인건비	청소 용역비	경비 용역비	안전 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연평균	12	75	29	13	-	8	3
년번	합계	240	1,494	573	255	-	164	66
1	2015	11.04	69	26	12	-	8	3
2	2016	12	75	29	13	-	8	3
3	2017	12	75	29	13	-	8	3
4	2018	12	75	29	13	-	8	3
5	2019	12	75	29	13	-	8	3
6	2020	12	75	29	13	-	8	3
7	2021	12	75	29	13	-	8	3
8	2022	12	75	29	13	-	8	3
9	2023	12	75	29	13	-	8	3
10	2024	12	75	29	13	-	8	3
11	2025	12	75	29	13	-	8	3
12	2026	12	75	29	13	-	8	3
13	2027	12	75	29	13	-	8	3
14	2028	12	75	29	13	-	8	3
15	2029	12	75	29	13	-	8	3
16	2030	12	75	29	13	-	8	3
17	2031	12	75	29	13	-	8	3
18	2032	12	75	29	13	-	8	3
19	2033	12	75	29	13	-	8	3
20	2034	12	75	29	13	-	8	3
21	2035	0.96	6	2	1	-	1	0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2. 운영비의 구성 : 유지관리비 (표준운영비), 2012년 8월 1일 기준)

(단위:백만원, VAT 제외, 불변기준)

구분		운영 개월수	합계	유지 보수비	교체비
	연평균	12	15	15	-
년번	합계	240	304	304	-
1	2015	11.04	14	14	-
2	2016	12	15	15	-
3	2017	12	15	15	-
4	2018	12	15	15	-
5	2019	12	15	15	-
6	2020	12	15	15	-
7	2021	12	15	15	-
8	2022	12	15	15	-
9	2023	12	15	15	-
10	2024	12	15	15	-
11	2025	12	15	15	-
12	2026	12	15	15	-
13	2027	12	15	15	-
14	2028	12	15	15	-
15	2029	12	15	15	-
16	2030	12	15	15	-
17	2031	12	15	15	-
18	2032	12	15	15	-
19	2033	12	15	15	-
20	2034	12	15	15	-
21	2035	0.96	1	1	-

※ 운영비는 본 협약 체결시 산정된 금액이므로 추후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본 협약에 따라 조정됨

3. 운영비 지급일정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2015	1	17	15	2026	45	34	22
	2	24	22		46	34	22
	3	25	22		47	34	22
	4	25	22		48	34	22
2016	5	25	22	2027	49	35	22
	6	25	22		50	35	22
	7	25	22		51	35	22
	8	26	22		52	35	22
2017	9	26	22	2028	53	36	22
	10	26	22		54	36	22
	11	26	22		55	36	22
	12	26	22		56	37	22
2018	13	27	22	2029	57	37	22
	14	27	22		58	37	22
	15	27	22		59	37	22
	16	27	22		60	38	22
2019	17	27	22	2030	61	38	22
	18	28	22		62	38	22
	19	28	22		63	38	22
	20	28	22		64	39	22
2020	21	28	22	2031	65	39	22
	22	28	22		66	39	22
	23	29	22		67	40	22
	24	29	22		68	40	22
2021	25	29	22	2032	69	40	22
	26	29	22		70	40	22
	27	29	22		71	41	22
	28	30	22		72	41	22
2022	29	30	22	2033	73	41	22
	30	30	22		74	42	22
	31	30	22		75	42	22
	32	31	22		76	42	22
2023	33	31	22	2034	77	43	22
	34	31	22		78	43	22
	35	31	22		79	43	22
	36	31	22		80	44	22
2024	37	32	22	2035	81	14	7
	38	32	22			-	-
	39	32	22			-	-
	40	32	22			-	-
2025	41	33	22	총 지급회수	80회	80회	
	42	33	22	지급회수평균	33	22	
	43	33	22	연평균	132	90	
	44	33	22	총 계	2,649	1,798	

※ 운영비 지급관련 민간투자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수선충당금 적립 일정

(단위:백만원, VAT 제외)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년도	차수	수선충당금(불변)
2015	1	1	2026	45	4
	2	4		46	4
	3	4		47	4
	4	4		48	4
2016	5	4	2027	49	4
	6	4		50	4
	7	4		51	4
	8	4		52	4
2017	9	4	2028	53	4
	10	4		54	4
	11	4		55	4
	12	4		56	4
2018	13	4	2029	57	4
	14	4		58	4
	15	4		59	4
	16	4		60	4
2019	17	4	2030	61	4
	18	4		62	4
	19	4		63	4
	20	4		64	4
2020	21	4	2031	65	4
	22	4		66	4
	23	4		67	4
	24	4		68	4
2021	25	4	2032	69	4
	26	4		70	4
	27	4		71	4
	28	4		72	4
2022	29	4	2033	73	4
	30	4		74	4
	31	4		75	4
	32	4		76	4
2023	33	4	2034	77	4
	34	4		78	4
	35	4		79	4
	36	4		80	4
2024	37	4	2035	81	3
	38	4			
	39	4			
	40	4			
2025	41	4			
	42	4			
	43	4			
	44	4			
총 지급회수					80회
총 계					304

※ 비고

- 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 계좌로 관리하되 해당계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 수선충당금 사용 시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수선비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방식 및 사용금액에 대해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관리운영권 종료 시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별표 13]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수량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대상시설 및 본 협약에서 정한 기록물 일체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관리지침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비상시 대책방안 및 비상연락망- 특기사항 등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지관리 공구 및 장비일체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관리시스템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인수·인계서	1식	

※ 실시계획승인 요청 시 별도 제출

[별표 14]

해지시 지급금

◎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 1) 건설기간 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 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한다.
- 2) 운영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 하여 산정한다.
- 3) 해지시 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 부가세를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업자귀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 ³ 로 할인한 현재가치)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times [1 + A^{1\downarrow}]$	$C + ((D)-(C)) * 1/3$
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times [1+(A+B)/2]$	$C + ((D)-(C)) * 2/3$
정부 귀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times [1 + B^{2\downarrow}]$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 ⁴ 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주: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 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 시 적용된 [국채금리* + 가산율]

* 여기서 국채금리*는 지표금리를 의미함

[별표 15]

공과금

[●:SPC, ○:사용자]

- 충남대 대덕캠퍼스

구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화료	비고
기숙사	세대	○	○	○	○	사용자 부담
관리시설	사감실	○	○	○	○	
	관리실	○	○	○	○	
	회의실	○	○	○	○	
편의시설	휴게실	○	○	○	○	
	다목적실 (씽크대설치)	○	○	●	○	- 사용자 부담 - 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측에서 결정
	토의실	○	○	●	○	
	체력단련실	○	○	●	○	
공용공간	로비	○	○	○	○	
	창고	○	○	●	○	
	기계실	○	○	●	○	
	전기실	○	○	○	○	
	통신실	○	○	○	○	
	복도, 계단, 화장실	○	○	○	○	
부속사업 (수익시설)	세탁실/다리미실	●	●	●	●	사업시행자 부담
	미용실	●	●	●	●	
	당구장	●	●	●	●	

* SPC/운영사 사무실은 사업시행자 부담

[●:SPC, ○:사용자]

- 충남대 보운캠퍼스

구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화료	비고
기숙사	세대	○	○	○	○	사용자 부담
관리시설	사감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부담 - 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측에서 결정
	회의실	○	○	○	○	
	안내 및 관리실	○	○	○	○	
편의시설	토의실	○	○	○	○	
	체력단련실	○	○	○	○	
	휴게 및 공동취사	○	●	○	○	
공용공간	로비	○	●	○	○	
	창고	○	○	○	○	
	기계실	○	○	○	○	
	전기실	○	●	○	○	
	통신실	○	○	○	○	
	복도, 계단, 화장실	○	○	○	○	
부속사업(수익시설)	세탁실/다리미 실	●	●	●	●	사업시행자 부담

* SPC/운영사 사무실은 사업시행자 부담

[●:SPC, ○:사용자]

- 군산대학교

구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화료	비고
기숙사	세대	○	○	○	○	사용자 부담
관리시설	사감실	○	○	○	○	
	관리실 (당직실, 행정실)	○	○	○	○	
	창고	○	○	○	○	
편의시설	독서실	○	○	○	○	- 사용자 부담 - 미화원 휴게실은 SPC 부담
	휴게공간	○	○	○	○	
	공동세탁실	○	○	○	○	
공용공간	미화원휴게실	●	●	●	●	- 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측에서 결정
	공용화장실(남)	○	○	○	○	
	공용화장실(여)	○	○	○	○	
	상담실	○	○	○	○	
	로비, 복도, 전 기실내부주차 장, 통신실, 기계실 등 포함	○	○	○	○	

* SPC/운영사 사무실은 사업시행자 부담

[별표 16]

재무모델(C/D)

- ◎ 본 사업의 재무모델 전자파일(운영비용모델 포함)을 CD-ROM으로 별첨함



2



